

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각종 사업과 교외 연구사업에 대한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간접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간접비 징수대상) ① 교외의 연구(사업)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모든 산학협력사업비, 위탁사업비 및 교외연구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연구(사업)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.

③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경우 본 대학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간접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간접비 계상 및 징수율) ① 간접비는 사업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상 및 납부하여야 한다.

- 다 음 -

과제 구분	징수율 (%)	비 고
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규정 적용과제	24.58 %	
산업체 및 기타기관 연구과제	23 %	
산학협력단 운영 학교기업	20 %	

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. 다만,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율로 한다.

제5조(간접비의 사용)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.

1.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
2.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경비
3.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, 시설, 기자재 등 공통 유지관리비
4. 공동기자재, 연구시설, 장치구입 등 연구인프라 구축 경비
5. 산학협력단 관리·운영비 및 관리요원의 인건비
6.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금 간접비의 30% 지급

② 간접비는 연구(사업)비 지급 시 징수한다.

제6조(준용) 간접비회계의 관리 운영은 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”과 “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”에 준용하여 운영한다.

부 칙(2019. 12. 30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